

#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

## [현장 예방점검의 날]

사업주분들이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「자가진단표」입니다. 귀사가 노동관계법령 등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이 「자가진단표」를 활용하여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가진단시 궁금하신 내용은 「노무관리 가이드북」\*을 활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\* 파일 내려받기: 고용노동부([www.moel.go.kr](http://www.moel.go.kr)) → 배너(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 및 노무관리 가이드북)

2023년



## 1. 근로조건 서면 명시

법 조항	진단 사항 및 방법	진단 결과
근로기준법 제17조 (근로조건 명시)	<p>① 근로계약을 서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었는지? * 서면 작성 + 근로자에 교부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준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준수
	<p>② 근로계약서에 법령 상 규정된 근로조건을 명시했는지? * ①임금(항목, 계산·지급방법), ②소정근로시간, ③유급휴일, ④연차유급휴가 등 [표준 근로계약서 참고] →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→ 정책 → 우측하단 (표준근로계약서)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준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준수
기간제법 제17조 (근로조건 서면명시)	<p>① 기간제·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서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었는지? * 서면 작성 + 근로자에 교부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준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준수
	<p>② 기간제·단시간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법령상 규정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였는지? * ①근로계약기간, ②근로시간·휴게, ③임금의 구성항목·계산방법 및 지불방법, ④휴일·휴가, ⑤취업장소·종사업무, ⑥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(⑥은 단시간근로자 한함)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준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준수

## 2. 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

법 조항	진단 사항 및 방법	진단 결과
근로기준법 제48조 (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)	<p>① 임금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였는지? * 근로자 특정정보, 임금지급일, 임금총액, 임금구성항목, 임금계산방법, 임금공제내역 ✓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·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경우 작성(연장·야간·휴일근로의 경우에는 시간 수 포함)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준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준수

## 3. 최저임금 준수

법 조항	진단 사항 및 방법	진단 결과
최저임금법 제6조 (최저임금의 효력)	<p>① 근로자에게 금년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? * '23년 시급 9,620원, 1주 소정근로 40시간 및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월급 2,010,580원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준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준수

## 4.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

관련 법 조항	진단 사항 및 방법	진단 결과
근로기준법 제36조 (금품 청산)	<p>▶ 근로자가 사망·퇴직시 임금,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였는지?</p> <p>* 해고, 합의해지, 정년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 해당 *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가능 (연 20% 지연이자 포함)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준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준수
근로기준법 제43조 (임금 지급)	<p>▶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였는지?</p> <p>* 다만, 법령·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일부 공제나, 통화 이외 다른 것으로 지급 가능 * 친권자, 법정대리인, 임금채권 양도인 등에게 대신 지급 불가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준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준수
	<p>▶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였는지?</p> <p>* 다만, 1개월을 넘는 기간에 대한 수당,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예외임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준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준수
근로기준법 제56조 (연장·야간 및 휴일근로)  5인 미만 미적용	<p>▶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%를 가산 지급했는지?</p> <p>* 연장: 법정근로시간 초과(단시간근로자는 소정 근로시간 초과) * 야간: 22시~06시 * 휴일: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%, 8시간 초과시 100% 가산(연장근로가 되어도 휴일가산 수당만 지급)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준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준수
퇴직급여보장법 제9조(퇴직금)	<p>▶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였는지?</p> <p>* 이때,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함 ✓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은행 등에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통장 개설토록 안내 필요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준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준수
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(확정급여형 급여 지급)	<p>▶ [확정급여형]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는지?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준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준수
	<p>▶ [확정급여형] 급여수준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는지?</p> <p>* 퇴직연금 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이 이에 미달할 경우 사용자가 부족 금액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준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준수
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(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 등)	<p>▶ [확정기여형]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/12 이상의 부담금을 사용자가 가입자 계정에 납입하는지?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준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준수
	<p>▶ [확정기여형] 퇴직 등 부담금 납입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부담금을 모두 가입자 계정에 납입했는지?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준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준수
퇴직급여보장법 제23조의7 (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등)	<p>▶ [중소퇴직기금제도]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/12 이상의 부담금을 사용자가 가입자 계정에 납입하는지?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준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준수
	<p>▶ [중소퇴직기금제도] 퇴직 등 부담금 납입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부담금을 모두 가입자 계정에 납입했는지?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준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준수

# (부록)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연락처



명칭	대표번호	관할구역
서울지방고용노동청	02-2231-0009	서울 중구 · 종로구 · 서초구 및 동대문구
서울강남지청	02-3468-4794	서울 강남구
서울동부지청	02-403-0009	서울 성동구 · 광진구 · 송파구 및 강동구
서울서부지청	02-713-0009	서울 용산구 · 마포구 · 서대문구 및 은평구
서울남부지청	02-2639-2100	서울 영등포구 · 강서구 및 양천구
서울북부지청	02-950-9880	서울 성북구 · 도봉구 · 강북구 · 중랑구 및 노원구
서울관악지청	02-3281-0009	서울 관악구 · 구로구 · 금천구 및 동작구
충부지방고용노동청	032-460-4545	인천 중구 · 동구 · 남구 · 연수구 · 남동구 및 옹진군
인천북부지청	032-540-7910	인천 부평구 · 계양구 · 서구 및 강화군
부천시청	032-714-8700	경기 부천시 및 김포시
의정부지청	031-877-0009	경기 의정부시 · 동두천시 · 구리시 · 남양주시 · 양주시 · 포천시 · 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
고양지청	031-931-2800	경기 고양시 및 파주시
경기지청	031-259-0204	경기 수원시 · 용인시 및 화성시
성남지청	031-788-1505	경기 성남시 · 하남시 · 이천시 · 광주시 · 여주시 및 양평군
안양지청	031-463-7300	경기 광명시 · 안양시 · 과천시 · 의왕시 및 군포시
안산지청	031-412-1992	경기 안산시 및 시흥시
평택지청	031-646-1114	경기 평택시 · 오산시 및 안성시
강원지청	033-269-3551	강원 춘천시 · 홍천군 · 인제군 · 화천군 · 양구군 및 경기도 가평군
강릉지청	033-539-1902	강원 강릉시 · 속초시 · 동해시 · 양양군 및 고성군
원주지청	033-769-0800	강원 원주시 및 횡성군
태백지청	033-552-0009	강원 태백시 및 삼척시
영월출장소	033-374-0009	강원 영월군 · 정선군 및 평창군
부산지방고용노동청	051-853-0009	부산 중구 · 동구 · 서구 · 사하구 · 영도구 · 남구 · 부산진구 및 연제구
부산동부지청	051-559-6688	부산 동래구 · 해운대구 · 금정구 · 수영구 및 기장군

명칭	대표번호	관할구역
부산북부지청	051-309-1500	부산 북구·사상구 및 강서구
창원지청	055-239-6500	경남 창원시·창녕군·합안군 및 의령군
울산지청	052-272-0009	울산
양산지청	055-387-0009	경남 김해시·밀양시 및 양산시
진주지청	055-752-0009	경남 진주시·사천시·합천군·거창군·산청군·하동군·함양군 및 남해군
통영지청	055-650-1951	경남 통영시·거제시 및 고성군
대구지방고용노동청	053-667-6200	대구 중구·동구·수성구·북구, 경상북도 영천시·경산시·청도군 및 군위군
대구서부지청	053-605-9000	대구 서구·달서구·남구·달성군, 경북 칠곡군(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)·고령군 및 성주군
포항지청	054-271-6700	경북 포항시·경주시·영덕군·울릉군 및 울진군
구미지청	054-450-3500	경북 구미시·김천시 및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
영주지청	054-639-1111	경북 영주시·상주시·문경시 및 봉화군
안동지청	054-851-8000	경북 안동시·예천군·의성군·영양군 및 청송군
광주지방고용노동청	062-975-6200	광주광역시, 전남 나주시·화순군·곡성군·구례군·담양군·장성군·영광군 및 함평군, 제주특별자치도
전주지청	063-240-3400	전북 전주시·남원시·정읍시·장수군·임실군·순창군·완주군·진안군 및 무주군
익산지청	063-839-0008	전북 익산시 및 김제시
군산지청	063-452-0009	전북 군산시·부안군 및 고창군
목포지청	061-280-0100	전남 목포시·무안군·영암군·강진군·완도군·해남군·장흥군·진도군 및 신안군
여수지청	061-650-0108	전남 여수시·순천시·광양시·고흥군 및 보성군
대전지방고용노동청	042-480-6290	대전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 공주시·논산시·계룡시 및 금산군
청주지청	043-299-1114	충북 청주시·진천군·괴산군·보은군·옥천군·영동군 및 증평군
천안지청	041-560-2800	충남 천안시·아산시·당진시 및 예산군
충주지청	043-840-4000	충북 충주시·제천시·음성군 및 단양군
보령지청	041-931-6640	충남 보령시·서천군·청양군·홍성군 및 부여군
서산출장소	041-661-5630	충남 서산시 및 태안군



#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

[현장 예방점검의 날]



고용노동부

(우)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
상담문의 (국번없이)1350